

# 울산 진하 한양립스 그랑블루 기관추천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의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였더라도 청약신청일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합니다.
- 2018.05.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 2018.05.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을 충분히 안내 및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75-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28~35층 6개동 공동주택 475세대 중 일반공급 212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총 22 세대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미정(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주택형

	주택형	타입	주택형별 계약면적					일반분양 총 세대수	기관추천 배정호수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 부대복리시설 포함)	합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민영주택	074.4079A	74A	74.4079	20.6265	95.0344	35.5789	130.6133	107	11
	074.0636B	74B	74.0636	21.1208	95.1844	35.4142	130.5986	16	2
	084.9363C	84C	84.9363	23.4357	108.3720	40.6130	148.9850	89	9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이하 민영주택 10%범위 내 공급

구 분		74A		74B		84C		배정세대 소계	예비세대 소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등(국가보훈처)	2	(10)	1	(5)	2	(10)	5	25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0)	-	-	1	(5)	3	1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0)	-	-	2	(10)	4	20
	장애인	3	(10)	-	-	2	(10)	5	20
	중소기업 근로자	2	(10)	1	-	2	(5)	5	15
계		11	(50)	2	(5)	9	(40)	22	95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대상자 추천 시 청약 주택형 필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구분	일정 (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4.06.28.(금) 예정	* 일간신문 및 분양 홈페이지 (추후 확정시 별도 공지)
건본주택 오픈	미정	* 당사 건본주택 (특별공급 안내문 참조)
특별공급 접수	2024.07.08(월) 예정	* 인터넷 신청(www.applyhome.co.kr) (08:00~17:30) * 건본주택 신청 시(10:00~14:00)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함 (자격입증 서류 지참후 내방하여야 접수 가능함)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4.07.18.(목) 예정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 당사 분양 홈페이지 (추후 확정시 별도 공지)
계약 체결	2024.07.29.(월)~ 2024.07.31(수)	* 장소 : 당사 건본주택 * 시간 : 10:00~16:00

- ※ 2024.07.01.(월) 청약홈(www.applyhome.co.kr)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신청을 원칙으로 진행 함.
-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분양홈페이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 rowspan="2">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당첨이 될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또한, 예비입주자에서도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p>-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p> <p>※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p> <p>-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p> <p>-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p> <p>■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p> <p>※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p> <p>■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p>
--

구분	내용
----	----

청약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의 경우 입주자저축 요건 의무 없으며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복무군인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종류	추천기관	통장사용	특공 1회제한	유족 신청가능	공공 임대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가 유공자 등	1.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x	0	0	-	0	0										
		2.보훈대상자		x	0	0	-	0	0										
		3.5.18유공자		x	0	0	-	0	0										
		4.특수임무유공자		x	0	0	-	0	0										
		5.참전유공자		x	0	-	-	0	0										
	장기복무제대군인		0	0	-	-	0	0											
	10년 이상 복무군인	국군복지단(복지사업운영과)	0	0	-	-	0	0											
	중소기업근로자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	0	-	-	0	0											
장애인	울산광역시청 복지여성건강국 장애인복지과	X	0	-	-	0	0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p> <p>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별 예치금액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구분</td> <td style="width: 25%;">울산광역시</td> <td style="width: 25%;">부산광역시</td> <td style="width: 25%;">경상남도</td> </tr> <tr> <td>전용면적 85㎡이하</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이하</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d>300만원</td> </tr> </table>								구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구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단,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 공급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상기 청약 계획 및 일정은 인·허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2024.06.13.[(금)예정]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태 세부사항 등은 견본주택,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 당사 분양 홈페이지 (추후 확정시 공지 예정)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 최종 통지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지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 : 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전 서류 확인 및 관계기관의 전산검색을 통해 과거당첨사실, 주택소유사실 등 입주대상자 및 세대원의 자격확인을 통해 부적격 사항 확인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4.03.25. 시행 및 개정된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377-24번지 울산 진하 한양립스 그랑블루 모델하우스 (세이브존 야외 주차장)**

\* 본 안내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최종 입주자모집공고 및 당사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052)294-1234**

■ **시행 : 진하오션뷰지역주택조합** ■ **시공 : ㈜한양건설**